## 소액사건심판법

[시행 2023. 3. 28.] [법률 제19281호, 2023. 3. 28., 일부개정]

법무부 (법무심의관실) 02-2110-3164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(支院)에서 소액(少額)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「민사소송법」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23. 3. 28.]

- **제2조(적용 범위 등)**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(이하 "소액사건 "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.
  - 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민사소송법」의 규정을 적용한다.

[전문개정 2023. 3. 28.]

- 제3조(상고 및 재항고)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(本院)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・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(上告) 또는 재항고(再抗告)를 할 수 있다.
  - 1. 법률·명령·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·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
  - 2.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

[전문개정 2023. 3. 28.]

- 제4조(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) ① 소(訴)는 구술로써 제기할 수 있다.
  - ② 구술로써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서기관·법원사무관·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(이하 "법원사무관등"이라 한다)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.
  -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(提訴調書)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3. 3. 28.]

- 제5조(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) ① 당사자 양쪽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한다.

[전문개정 2023, 3, 28,]

- **제5조의2(일부청구의 제한)** ① 채권자는 금전,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.
  - ② 제1항을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(却下)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3. 3. 28.]

- 제5조의3(결정에 의한 이행권고)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수 없다.
  - 1.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
  - 2.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
  - 3.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- ②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, 법정대리인, 청구의 취지와 원인 및 이행조항을 적고,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.
  - ③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송달은 「민사소송법」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④ 법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「민사소송법」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3. 3. 28.]

- **제5조의4(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)**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다만,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 본문의 기간은 불변기간(不變期間)으로 한다.
  -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.
  - ④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(取下)할 수 있다.
  - 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23. 3. 28.]

- **제5조의5(이의신청의 각하)**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3. 3. 28.]

- **제5조의6(이의신청의 추후보완)** ①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. 다만,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고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.
  - ② 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.
  - ③ 법원은 추후보완의 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.
  -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  - ⑤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에 따른 집행정지 등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제500조를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23. 3. 28.]

- **제5조의7(이행권고결정의 효력)**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.
  - 1.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
  - 2.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
  - 3.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
  - ②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.

[전문개정 2023. 3. 28.]

- **제5조의8(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)** ①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.
  - 1.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
  - 2.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
  - 3.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
  - ②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내주고,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각각 적어야 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한 경우
- 2. 원고가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한 경우
-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「민사집행법」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[전문개정 2023. 3. 28.]

**제6조(소장의 송달)**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 다만, 피고에게 이행권고결 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23. 3. 28.]

- 제7조(기일의 지정 등) ① 소가 제기된 경우 판사는 「민사소송법」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.
  - ② 판사는 제1항의 경우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(審理)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③ 판사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3. 3. 28.]

제7조의2(공휴일·야간의 개정)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개정(開廷)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3. 3. 28.]

- 제8조(소송대리에 관한 특칙) ① 당사자의 배우자·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수권관계(授權關係)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수권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[전문개정 2023. 3. 28.]

- 제9조(심리절차상의 특칙) ① 법원은 소장・준비서면,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(棄却)할 수 있다.
  - ② 판사가 바뀐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(更新) 없이 판결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3. 3. 28.]

- 제10조(증거조사에 관한 특칙) 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 - ② 증인신문(證人訊問)은 판사가 한다. 다만, 당사자는 판사에게 알리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.
  - ③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신문을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3. 3. 28.]

- **제11조(조서의 기재 생략)** ① 판사가 허가한 경우에는 조서에 적을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.
  - ② 제1항 본문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(和解)・인낙(認諾)・포기・취하 및 자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[전문개정 2023. 3. 28.]

- 제11조의2(판결에 관한 특례)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.
  - 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(主文)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.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 판결서에는 「민사소송법」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1.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
- 2.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3.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,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

[전문개정 2023. 3. 28.]

제12조 삭제 <1990. 1. 13.>

제13조 삭제 <1990. 1. 13.>

**제14조** 삭제 <1990. 1. 13.>

제15조 삭제 <1996. 11. 23.>

제16조(시행규칙)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23. 3. 28.]

부칙 <제19281호,2023. 3. 28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(판결서의 이유 기재 노력의무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